

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에 관한 동의안

의안 번호	3
----------	---

제출연월일 : 2006년 7월 일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- 지역의 보건의료 향상을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사업과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욕구에 부응하는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우리군 보건의료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함.
- 이에 본계획의 제출을 위한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골자

가. 수립근거 : 지역보건법 제3조

나. 수립내용 : 제4기(2007~2010)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

다. 수립목적

- 보건의료 사업의 평가와 현황분석을 통해 우리군 보건의료사업의 개선방향과 제반여건을 파악하며, 의료취약의 현안문제,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질병 및 보건복지 환경의 문제점,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,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보건의료사업의 전환모색 등 새롭게 제시되는 지역사회의 욕구와 국가 보건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사회 기반과 역량을 바탕으로 우리군 보건의료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함.

라. 주요사업 목표

- 노인인구 증가와 건강검진체계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조기검진 등의 의료체계가 요구되고 있어 보건의료원 의료서비스 영역 및 기능확대(시설확보 및 검진장비 보강)

- 보건기관의 역량을 강화하여 포괄적 방문보건사업의 지속실시 및 재가복지서비스의 연계체계 강화
- 인구의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위험군에 대비한 국민의 평생 건강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연령대별 프로그램 개발 및 정착
- 전염병감시체계를 확보하여 조기 대응체계 구축

마. 중점사업 내용

- 보건의료원 진료기능 확대를 위한 시설확충
 - 보건의료원 증축(230평) : 1,054백만원(국비703, 도비176, 군비175)
 - 진료기능 강화(생화학분석기 등 6종)
 - ⇒ 787백만원(국비525, 도비131, 군비131)
- 지역보건기관 시설확충 완료
 - 도암보건지소 : 670백만원(국비334, 도비84, 군비252)
 - ⇒ 보건진료소(2개소) : 750백만원(국비253, 도비63, 군비434)
- 포괄적 방문보건사업
 - 지역실정에 맞는 방문보건팀을 구성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 의료 문제 해소 및 복지서비스 제공
- 건강증진사업
 - 국민의 평생 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연령대별 프로그램 개발 및 정착(운동, 금연, 영양, 절주)
- 방제사업
 - 하절기 전염병에 대한 효율적이며, 친환경적인 방역체계 구축
- 노인수발급여 시범사업추진
 - 고령화, 핵가족화, 노인시설 부족 등에 따라 치매·중풍 등 노인들의 질환이 증가함에 따라 심각한 사회문제 대두

- 관내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별도의 노인수발 인력과 시설을 확보하여 전문적으로 농촌지역 노인을 간병, 수발해 나갈 계획임
- 우선 전국에서 2개소를 시범실시하는데 본사업을 유치하여 추진할 계획임
- 개소당 노인수발인력 3-4명 확보 : 총 34명
- ⇒ 소요예산 : 3,791백만원(국비 1,895, 도비 948, 군비 948)

바. 기타 지속사업 추진

- 매년 정례적으로 추진하는 지역보건법 제9조의 모든 업무
 - 구강보건사업, 모자보건사업, 정신보건사업, 재가암환자관리사업, 전염병예방관리사업, 결핵관리사업, 성병관리사업, 노인보건사업, 만성퇴행성질환관리사업, 공중보건 의사 및 보건진료원 지도감독, 의·약무지도사업, 응급의료체계 구축, 실험 및 검사 등

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지역보건법 제3조 1항(별첨)

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에 관한 동의안

지역의 보건의료 향상을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사업과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욕구에 부응하는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우리군 보건의료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함. 이에 본 계획의 제출을 위하여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.

1. 수립계획

가. 수립근거 : 지역보건법 제3조

나. 수립내용 : 제4기(2007~2010)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

다. 주요 사업내용

○ 보건의료원 증축 및 진료기능 확대

- 보건의료원 증축(230평) 및 진료기능 강화(검진장비 보강)

○ 지역보건기관 시설확충 완료

-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시설개선으로 주민 건강 편익증진

⇒ 2007년도 : 도암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(2개소)

○ 포괄적 방문보건사업

- 지역실정에 맞는 방문보건팀을 구성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 의료 문제 해소 및 복지서비스 제공

○ 건강증진사업

- 군민의 평생 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연령대별 프로그램 개발 및 정착(운동, 금연, 영양, 절주)

○ 방제사업

- 하절기 전염병에 대한 효율적이며, 친환경적인 방역체계 구축

라. 지속추진 사업

○ 위 중점사업을 제외한 지역보건법 제9조의 모든 업무

마. 노인수발급여 시범사업 실시계획

○ 고령화, 핵가족화, 여성의 사회활동증가, 서민층을 위한 노인시설 부족 등에 따라 치매·중풍노인들의 간병,수발문제 해결(국회 통과)
 ⇒ 평창군 시범사업계획서 제출(2006년 8월) : 대상지역 확정(10월)

바. 기타사항

○ 군 계획서 제출(8월)→강원도(11월)→보건복지부
 - 평가(100%) : 강원도(50%) + 보건복지부(50%)
 ⇒ 지역보건의료계획작성의 내실화 유도
 ⇒ 사업수행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지속적 파악
 ⇒ 현황파악 및 보건사업 우선순위 설정 근거자료
 ⇒ 기타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(사업비 등)

2. 예산수반 계획(2007~2010)

- 국·도비 지원 및 부담금액

구 분	사 업 명	계	국비(천원)	지방비(천원)		
				계	도	군
	계	7,752,299	3,709,620	4,042,679	1,401,281	2,641,398
시 설 비	소 계	2,474,299	1,289,454	1,184,845	322,364	862,481
	보건의료원 증축	1,054,299	702,867	351,432	175,716	175,716
	도암보건지소 신축	670,000	334,013	335,987	83,504	252,483

구 분	사 업 명	계	국비(천원)	지방비(천원)		
				계	도	군
시 설 비	고길보건진료소 신축	375,000	126,287	248,713	31,572	217,141
	면은보건진료소 신축	375,000	126,287	248,713	31,572	217,141
장비보강	생화학분석기 등	787,000	524,666	262,334	131,167	131,167
부지매입비		700,000	-	700,000	-	700,000
노인수발시범	소 계	3,791,000	1,895,500	1,895,500	947,750	947,750
	시설비	851,000	425,500	425,500	212,750	212,750
	장비비	600,000	300,000	300,000	150,000	150,000
	인건비	2,040,000	1,020,000	1,020,000	510,000	510,000
	운영비	300,000	150,000	150,000	75,000	75,000

- 연도별 예산확보 추계(국도비 포함)

(단위 : 천원)

기관명	계	2007년	2008년	2009년	2010년
계	7,752,299	4,172,299	1,620,000	980,000	980,000
시 설 비	2,474,299	2,474,299			
장비보강	787,000	147,000	640,000		
부지매입비	700,000	700,000	-	-	-
노인수발 시범사업	소 계	3,791,000	851,000	980,000	980,000
	시설비	851,000	851,000	-	-
	장비비	600,000	-	200,000	200,000
	인건비	2,040,000	-	680,000	680,000
	운영비	300,000	-	100,000	100,000

3. 예산확보 대책(필요성)

- 보건시설개선은 2007년까지 마무리 추진(노후, 협소)
 - 보건의료원 증축, 보건지소 및 진료소 시설개선에 대하여는 국비를 지원받아 군비부담 최소화
 - ⇒ 국비확보 추진(2007년도 농특지원 신청)
- 보건의료원 검진장비 보강(2차 진료기능 수행)
 - 보건의료원 증축 후 보강
 - ⇒ 국비확보 추진(2008년도 농특지원 신청)
- 노인수발급여 시범사업 실시로 거동불편 환자들의 수발서비스 욕구충족
 - 시범대상지역 선정을 위한 계획서 제출 및 중앙차원의 국비지원 협의(2006. 8월)

“ 불 입 ”

관계법령

地域保健法

第3條(地域保健醫療計劃의 수립 등) ① 市長·郡守·區廳長(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. 이하 같다)은 地域住民, 保健醫療關聯機關·團體 및 專門家의 의견을 들어 당해 市·郡·區의 地域保健醫療計劃을 수립한 후 당해 市·郡·郡議會의 議決을 거쳐 特別市長·廣域市長·道知事(이하 “市·道知事”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